특 허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7허1731 권리범위확인(디)

원 고 A

피 고 주식회사 선우아이디

변론종결 2017. 6. 15.

판 결 선 고 2017. 7. 6.

주 문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2017. 2. 7. 2016당1043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갑 제1, 4호증)

- (1)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B/C/디자인등록 D
- (2) 물품의 명칭 : E
- (3) 디자인의 설명 및 도면: [별지 1]과 같다.

나. 확인대상디자인

- (1) 물품의 명칭 : E
- (2) 디자인의 설명 및 도면: [별지 2]와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 (1) 원고는 2016. 4. 22. 특허심판원에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그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2016당1043)를 하였다.
- (2) 특허심판원은 2017. 2. 7. "이 사건 등록디자인 중 기본적·기능적 형태에 불과하여 그 중요도가 낮게 평가되는 부분 및 기능적 변형에 해당하는 부분 등을 제외한나머지 차이점들로 인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그 전체적인 심미감이 상이하므로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심결취소사유)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세부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형상·모양 등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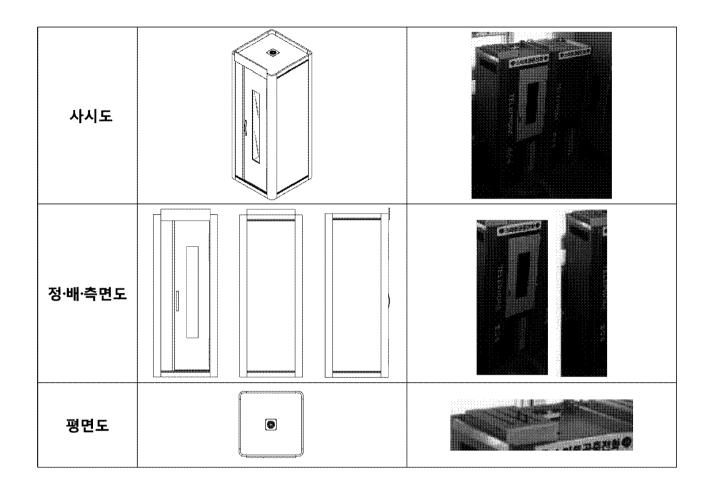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각 부분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적 느낌과 인상이 유사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그 물품의 성질, 용도, 사용형태 등에 비추어 보는 사람의 시선과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중심으로 대비·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2633 판결 등 참조).

디자인의 동일·유사 여부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 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양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그 물품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 내지 디자인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인 경우에는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부분들이 동일·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양 디자인이 서로 동일·유사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후166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검토

-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대상물품은 모두 내부에 공중전화를 설치하는 'E'에 관한 것으로 그 용도와 기능이 동일한 물품이다.
- (나) 양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이 잘 나타나는 사시도, 정면도, 좌측 면도, 평면도를 대비하면, 아래 표와 같다.

구분	이 사건 등록디자인	확인대상디자인
----	------------	---------



양 디자인은 모두 ① 물품이 전체적으로 박스 형태인 점, ② 결합된 양측판, 배판 및 문(도어) 지지판의 각 연결 모서리에 상판에서 하판까지 라운드형 몰딩이 형성된점, ③ 상판의 중심부에 환풍구가 형성된점, ④ 문(도어)의 좌측 중앙에 손잡이가 위치한점, ⑤ 문(도어)의 중심에는 직사각형의 관창(Window)이 형성된점 등에 있어서공통점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공통점 중 ①, ③ 내지 ⑤ 부분과 같이 물품이 전체적으로 박스 형태이고, 상판의 중심부에 환풍구가 형성되며, 문(도어)의 정중앙 좌측에 손잡이를 배치하고, 문(도어)의 정중앙에 관창을 설치한 것은, 대상물품 자체의 기본적 형태이거나, 대상물품에 있어서의 위생, 편의 또는 안전을 위하여 필요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기본

적·기능적 형태 중 하나일 뿐으로서, 그 중요도 및 창작성이 높게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위 공통점 중 ② 부분, 즉 각 연결 모서리에 상판에서 하판까지 곡면 몰딩 부분도 이미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의 공중전화박스의 물품분야에서는 흔한 형상으로서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양 디자인의 위 공통점들만으로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유사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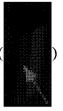
게다가 양 디자인은, 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전면에 상판 몰딩의 상단이 다른 몰딩의 상단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는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상판 몰딩의 높이가 모 두 동일하게 형성된 점, 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상판에 환풍기 이외에 아무 것도 설 치되어 있지 않은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전면에서 볼 때 좌측 및 후면에 부속품들



'이 설치되어 있는 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확인대상디자인

과는 달리 전면부 상단의 몰딩과 문(도어)의 좌측에 문자 등의 인쇄 또는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양측판의 상단부에는 개구부가 형성되지 않은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의 측면부 상단부에 직사각형의 개구부가 형성되어 있는점, ③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문(도어)은 전면이 밀폐되어 있는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문(도어)의 크기를 전면의 2/3 정도로 작게 형성하여 위쪽에 배치하고, 문(도어)의상단과 상판 사이는 짧게, 문(도어)의 하단과 하판 사이는 문(도어) 전면의 1/3 정도로넓게 개방되어 있는점, ⑥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문(도어)이 밀폐되어 관창을 통해서만 내부를 볼 수 있는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상부 문(도어)의 관창 외에 하단부가 개

방되어 정면에서 볼 때 물품 내부 우측에 좌측 모서리 부분이 라운드된 의자(



가 배치되어 있는 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상ㆍ하판 몰딩의 아래 및 윗부분에는

수평으로 4개의 직선 '

'이 형성되어 있는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에는 대응되는 위치

에 아무런 선처리가 되어있지 않는 점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위 차이점 중 ①, ② 부분과 같이 잘 보이지 않는 상단부에 부속품을 추가한다거나 측면에 개구부를 설치하는 것은 '공중전화박스'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지식을 가진 자라면 흔히 가할 수 있는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고, 차이점 ⓒ 부분과 같이 전면에 문자 등의 인쇄 또는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은 물품의 용도 등을 수요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디자인을 구성한다고 볼 수 없어 그 디자인적 창작성을 부여하기 어려운 것이므로, 위 ②, ⑤, ② 부분 차이점들의 중요도는 그리 높지않다.

그러나 위 차이점 중 ①, ② 내지 ② 부분(특히 ②, ④ 부분은 전면부는 물론이고 전체 디자인에서도 그 차지하는 면적 및 구조·디자인 변경의 정도가 상당히 크다)은 양 디자인의 요부라고 할 수 있는 전면부에 있어서의 차이점들로서 전체적인 심미감에 있어서 뚜렷한 차이를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보인다. 즉, 양 디자인의 대상물품인 'E'의 경우,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은 문(도어)이 위치하는 전면부라고 할 것이므로 그 전면부가 양 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으로서 요부를 구성하게 되고, 이러한 전면부에 관한 차이점 ①, ② 내지 ② 부분, 특히 ②, ④ 부분의 형태 차이는 디자인에 구조적으로 큰 변경을 가한 것으로서 대상물품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확연히 구별되는 창작성을 구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서로 유사하지 않다.

(3)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일반적으로 실외용으로 설치되는 공중전화박스는 외부의 소음 차단을 위해 전면의 문(도어)이 전면의 길이만큼 형성되고, 실내용으로 설치되는 공중전화박스는 전면의 문(도어)이 기본디자인의 문(도어)보다 1/2 또는 1/3 정도 짧게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실정이므로, 공중전화박스에 있어서 전면의 문(도어)의 크기는 편의에 따라 임의로 결정되고 변경되는 요소에 불과하다. 따라서 일반 수요자들로서는 양 디자인의 대상물품에 관하여 동일한 디자인의 공중전화박스로서 단지 전면의 문(도어)의 크기만 변경된 것이라는 점을 쉽게 인식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확인대상디자인으로부터 느껴지는 전체적인 심미감은 극히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는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공중전화박스가 실외용인지 또는 실내용인지 여부에 따라 그 전면에 설치되는 문(도어)의 크기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일반적 경향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게다가, 설령 그와 같은 경향이 있어 문(도어)의 크기 조절이 기능적 변형에 해당

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변형이 디자인의 요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전체적인 심미감에 뚜렷한 차이를 가져오는 이상, 그러한 차이가 있는 확인대상디자인과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유사한 디자인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결국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지 않아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우수

판사 나상훈

판사 이호산

[별지 1]

이 사건 등록디자인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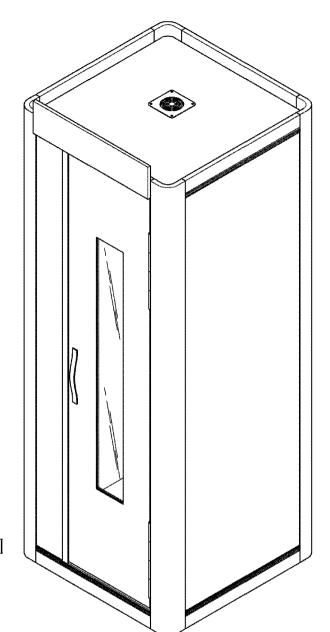
【디자인의 설명】

- 1. 재질은 금속, 목재, 유리 및 합성수지재임.
- 2. 내부에 공중전화를 설치하여 공중전화박스로 사용하는 것임.
- 3. 본원 디자인은 화상통화, 휴대폰충전 또는 전화통화, 인터폰의 송수신을 위한 박스로도 사용할 수 있음.
- 4. 출입문의 가는 실선은 투명부분을 나타내는 것임.
- 5. 도면의 간단한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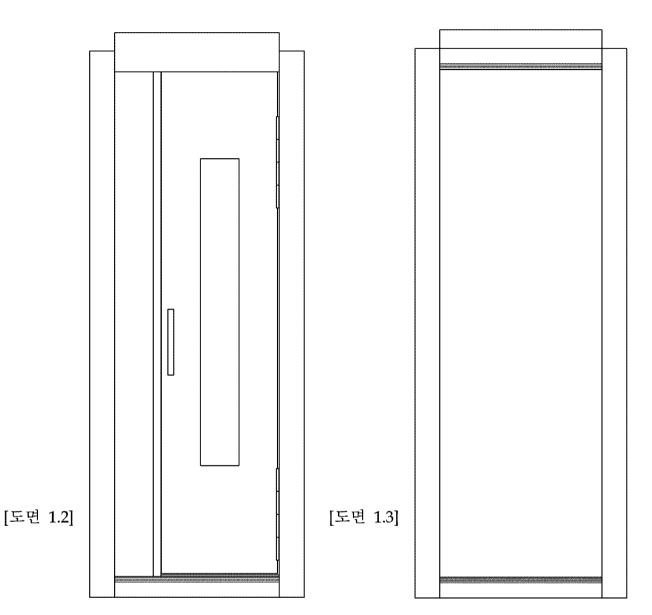
[도면 1.1]은 사시도, [도면 1.2]는 정면도, [도면 1.3]은 배면도, [도면 1.4]는 좌측면도, [도면 1.5]는 우측면도, [도면 1.6]은 평면도, [도면 1.7]은 저면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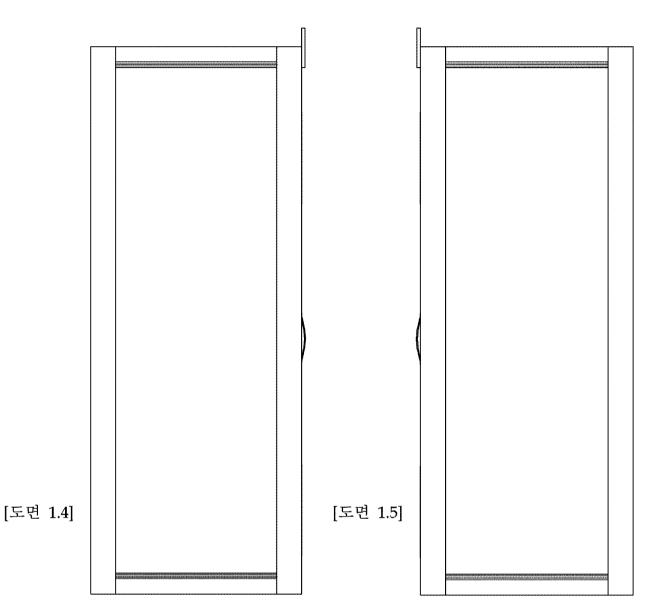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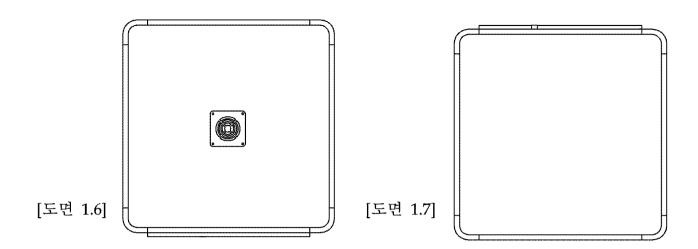
"E"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함.



[도면 1.1]







확인대상디자인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Е

【디자인의 설명】

- 1. 재질은 금속, 목재 및 합성수지임.
- 2. 내부에 의자와 공중전화를 설치하여 공중전화 박스로 사용하는 것임.

[도면대용 사시사진]



[도면대용 참고사진]

